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소정보 생활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이 입체화·대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